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전 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주기를 다음 표의 안전등급에 따른 해당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검사·점검종류 및 주기 안전등급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점검		
	2년주기	3년주기	4년주기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A(우수)	3년	4년	5년	2년	3년	4년
B(양호)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C(주의)						
D(경고)	1년	2년	3년	1년	1년	2년
E(위험)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 6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말한다.